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09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최보윤・이성권・정성국

고동진 • 조지연 • 김성원

김 건 • 박준태 • 김용태

최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비대면진료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,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.

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,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, 원활한 비대면진료의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

과 동시에,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·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 설 등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비대면진료)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선·무선·화상통신,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, 진단, 상담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(이하 "비대면진료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- ②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(이하 "비대면진료의 사"라 한다)는 화상을 통하여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비대면진료의사 또는 비대면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- 1.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
- 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대면진료의 실시

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- 제34조의3(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) 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(이하 "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의 신고를 한 자(이하 "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"라 한다)는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
 - 2.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·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
 - 3.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로 하여금 보건의료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
 - 4. 이 법, 「약사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위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)하는 행위
 - 5.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에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수 있다.

- ④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진료의 실시, 기록 관리, 처방전 발송, 비대면진료에 대한 설명 등을 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의 신고, 운영 기준,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3조제1항 중 "제35조제2항"을 "제34조의2제3항, 제35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88조제1호 본문 중 "제33조제4항"을 "제33조제4항, 제34조의3제2항" 으로 한다.

제89조제1호 중 "제33조제9항"을 "제33조제9항, 제34조의2제3항제1호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 <신 설> 제34조의2(비대면진료) ① 의료업에 중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선·무선·화상통신,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절병의 지속적 관찰, 진단, 상담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(이하 "비대면진료"라 한다)를 할수 있다. ②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(이하 "비대면진료의사"라 한다)는 화상을 통하여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③ 비대면진료의사 또는 비대면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 1 이외그 의로기관을 비대면진로 기계약 한다. 	현 행	개 정 안
<u>1. 커전늄 커쇼기선글 미대인신</u>		제34조의2(비대면진료)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판단되는 경우 유선·무선·화상통신,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질병의 지속적 관찰, 진단, 상담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(이하 "비대면진료"라 한다)를 할수 있다. ②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(이하 "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(이하 "비대면진료의사"라 한다)는 화상을통하여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③ 비대면진료의사 또는 비대면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

<신 설>

하지 아니할 것

- 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 대면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 비를 갖출 것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의3(비대면진료 중개 플랫 폼 사업) 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대면진료 를 중개하는 영업(이하 "비대 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의 신고를 한 자(이하 "비대면진료 중개 플 랫폼 사업자"라 한다)는 비대 면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

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
- 2.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 ·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
- 3.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로 하여금 보건의료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
- 4. 이 법, 「약사법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위반하여보건의료인 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(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)하는 행위
- 5.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를 저 해하거나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행위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 료 중개 플랫폼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운영 기준을 마 런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

제63조(시정 명령 등) ①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 항, 제16조제2항,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·제3항, 제23조제2항, 제34조제2항, 제3 5조제2항, 제36조의2, 제37조제1항·제2항, 제38조제1항·제2항, 제38조제1항·제2항, 제38조의2, 제41조, 제41조의2제1항·제4항, 제42조, 제43조, 제45조, 제46조, 제47조제1항,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,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, 종합병원·상급종합병원·

④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중개
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
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
면진료의 실시, 기록 관리, 처
방전 발송, 비대면진료에 대한
설명 등을 할 수 있다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비대면진료
중개 플랫폼 사업의 신고, 운영
기준,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∥63조(시정 명령 등) ①
제34조
의2제3항, 제35조제2항

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.

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 항·제3조의4제1항·제3조의5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, 의료기관의 장 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 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 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그 시설·장비 등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 다.

②·③ (생 략)

- 제8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7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9조, 제21조제2항(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2조제3항, 제27조제3항·제4항, 제33조제4항, 제35조제1항 단서, 제38조제3항, 제47조제11항, 제59조제3항, 제64조제2항(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69조제3항을 위

<u>.</u>	
① ② /커케키 키 O \	
②·③ (현행과 같음)	
	 제 <u></u>
제88조(벌칙) 1	
제88조(벌칙)	
제88조(벌칙)	
제88조(벌칙)	
제88조(벌칙)	

반한 자. 다만, 제19조, 제21 조제2항(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 어야 한다.

2. ~ 4. (생략)

- 제8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5조제1항, 제17조제1항 · 제2항(제1항 단서 후단과 제2 항 단서는 제외한다), 제17조의2제1항 · 제2항(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), 제23조의2제3항 후단, 제33조제9항,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
 - 2. ~ 4. (생략)